

# ICRP Oxford 會議

(1989년 10월 2일~12일)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國際放射線防禦委員會)는 주위원회와 제1~제4의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4월 파리에 개최된 주위원회회의에서 새임기(1989~1993년)의 위원이 지명된 것을 계기로 각 위원회의 합동회의가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열렸다. 구체적으로 1989년 10월 2일~7일은 각 전문위원회 및 주위원회와의 합동회의, 10월 9일~12일은 주위원회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한마디로, 전부터 1990년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어온 1977년 ICRP 기본권고개정안의 토의에 전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회의(10.2~7)는 4전문위원회회의가 주며, 주위원회원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 어느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였다. 10월 6일에는 각 전문위원회가 정리한 기본권고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위원회와의 합동검토회가 열렸으며, 또 이 권고안에 대한 코멘트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회의에는 10개소 이상의 관련단체나 국제기관에서 업저어버가 초대되었다. 10월 5일에는 이들 업저어버와 주위원회와의 회의가 있었다.

한편, 주위원회(10.9~12)에서도 전주에 4전문위원회와 업저어버에서 나온 기본권고안(제7차안)에 대한 의견검토에 시간을 보냈다. 결론을 말하면, 주위원회는 이하에 기술하는 점에 대하여 개정하도록 작업그룹(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4전문위원회위원장 및 사

무국담당자로 구성)에 지시하는 것과 함께 그룹멤버는 일을 분담하여 개정원안을 작성하여 1990년 1월의 작업그룹회의에서 제8차안을 준비한다. 이것을 정리한 후, 제8차안으로서 1990년 2월에는 전위원과 관계 여러 기관에 배부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특히, 이 기본권고안에 관련이 깊은 제1, 제4 양위원회는 4월경에 제9차안의 검토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토대로 6월에 주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능하면 그 시점에서 이것을 승인한다. 최종적인 편집을 경유하여 1990년말 까지 신권고를 출판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위원회를 11월상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예비일정도 결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신권고의 연내출판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권고안의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1989년 4월 주위원회 파리회의의 성명에 상술되어 있다. 즉, 신권고는 주문과 그 배경인 인용문헌을 나타내는 부속문서로서 구성되는데,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주위원회가 현재의 리이스추정치 측면에서 선량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기본적인 방어체계에 관한 최종결정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방어의 최적화(예를 들면, 모든 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최저준위로 억제할 것)등 라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하며 효율적인 원리이며, 또 선원관련의 구속치가 선량한도 보다 실제적인 의의가 크다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

제2장(방사선방어에 사용하는 물리량)에서는 신권고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하중계수(radiation weighting factors)와 부록 A의 서언에 제시되어 있는 선질계수(quality factors)와의 관계를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3장(방사선방어의 생물학적측면)에서는 손해(detriment)의 새사고와 그것이 주는 영향등을 밝힐 것, 실효선량당량이라는 용어의 개정을 조직하중계수(tissue weighting factors)와 관련시켜 검토할 것, 또 조직하중계수의 계산방법을 확인할 것 등을 제1위원회에 요청키로 하였다. 또한 중태의 정도가 정신지체에 문턱값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IQ값의 어긋남에 어떤 의의를 부여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아직 미해결이며, 임신부노동자의 태아에 대한 피폭한도에 대해서는 작업조건과 관련시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4장(방사선방어의 개념제약)에서는 「방사선방어시스템의 달성도평가」라는 항을 부가토록 하였다. 또 파리성명에서는 제5장(평

상상태에 대한 방어시스템), 제6장(긴급상태에 대한 방어시스템), 제7장(정상상태에 대한 위원회권고의 실제적 적용), 제8장(긴급상태에 대한 위원회권고의 실제적 적용), 제9장(권고의 요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4장에서 기술되는 방사선폭로의 3상황(planned, pre-existing, potential)에 대응시켜, 제5장을 「계획적 폭로상태에 대한 방어」, 제6장을 「선재적 폭로상황에 대한 방어」, 제7장을 「잠재적 폭로상황에 대한 방어」로 하고, 상기의 제9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또, 이번 주위원회에서는 일반개인과 작업자에 대한 선량한도에 대하여 주체적인 수리가 제안되었지만, 현상에서는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간 공표하지 않도록 요구되었다. 1990년 2월의 제9차안은 좀더 공개될 것이다.

그 이외의 토의사항중, “Radiological Protection of the Worker in Medicine and Dentistry”와 “RBE for Deterministic Effects”의 두 가지 보고가 승인되어, 곧 출판될 것이다.

## 1990년도 방사선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실시 안내

### ○ 보수교육일정, 정원 및 교육비

보수교육과정명	교육정원 (명)	교육일정		교육비 (원)	교육유효 기간
		1 회	2 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및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보수교육	60	'90. 5. 18 (7시간)	'90. 10. 12 (7시간)	19,000	5년
방사성 취급감독자 면허 및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보수교육	60	'90. 5. 25 (7시간)	'90. 10. 19 (7시간)	19,000	상동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보수교육	60	'90. 6. 1 (7시간)	'90. 10. 26 (7시간)	19,000	상동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60	'90. 6. 8 (7시간)	'90. 11. 2 (7시간)	19,000	3년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 820-2672~4)